

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 
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#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9월 9일 유완백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개정(제10559호, 2011.4.5) 및 동법 시행령 개정(제22780호, 2011. 3. 30)에 따라 과거 조례에 위임하여 정했던 과태료 경감사항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위임의 근거를 상실한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#### 4. 검토의견

금번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

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개정(2011.4.5) 및 동법 시행령 개정(2011. 3. 30)으로 과거 조례에 위임하여 정했던 과태료 경감사항을 법 시행령에 신설함에 따라 조례의 존속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. 끝.